

(비공식 번역본)

투자위원회 고시

제1/2560호

연구·개발을 위해 수입된 물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시행

연구·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불기 2520년(1977년) 투자촉진법 제16조 두 번째 단락, 제18조, 제30/1조에 의거하여 투자위원회는 촉진 혜택을 받은 자에게 연구·개발 및 관련 실험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각 회마다 1년 간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. 본 고시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되는 수입품은 기계 또는 원재료 또는 필수 재료용으로 수입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계 또는 원재료 또는 필요 자재는 제외한다. 해당 수입세 면제는 투자위원회가 정하고 통지한 유형, 수량, 기간, 조건 및 절차의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한다. 2014년 12월 3일 투자위원회 고시 제2/2557호 투자촉진 정책 및 기준에 첨부된 리스트에 따라 투자촉진 대상 활동은 다음과 같다.

- 7.11 연구·개발
- 7.12 바이오 기술 (활동 유형 7.12.1 – 7.12.4만 해당함)
- 8.1 표적 핵심기술 개발 (연구·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만 해당함)

이 고시는 2017년 2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고시일 2017년 3월 14일

(General Prayut Chan-o-cha)

투자위원회 의장